

수익자 총회의사록

1. 투자신탁명 : 동부델타-ACE 1 단위 주식혼합증권투자신탁 제 5-6 호
2. 일시 : 2008년 10월 22일(수) 오전 10시
3.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동부증권빌딩 12층 동부자산운용(주) 회의실
4. 출석수익자내용
 - 발행수익증권총수 : 3,963,306,550 좌
 - 총수익자수 : 39 명
 - 출석수익좌수 : 2,116,986,376 좌 (53.41%)
 - 참석수익자수 : 19 명(서면의결권에 의한 주주 포함)

자산운용회사인 동부자산운용(주)의 대표이사는 발행된 수익권의 총수 3,963,306,550 좌중 2,116,986,376 좌를 보유한 수익자(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자 포함)가 참석하여 발행된 수익권의 총수의 과반수 이상을 가진 수익자가 참석하였다는 간사의 보고에 따라 본 총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동부자산운용(주)의 대표이사는 약관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하나, 발행된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 전부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별도의 총회의 의장을 선출하지 아니하기로 하다.

부의 안건 : 추가신탁사항 및 신탁계약기간 변경의 건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추가신탁	제 9 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은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	제 9 조(추가신탁) 자산운용회사는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
신탁계약기간	제 11 조(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년간으로 한다. 단, 신탁계약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11 조(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동부자산운용(주)의 대표이사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자중 부의안건에 대해 찬성
100%를 통보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통보하다.

이상으로 금일의안을 전부심의 종료하였음을 고하고 동부자산운용(주) 대표이사는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동부자산운용(주) 대표이사는 아래에 기명 날인하다.

2008년 10월 22일

동 부 자 산 운 용(주)
대표이사 사장 한 동 쥐

